

# 滿洲國의 阿片政策

朴 權\*

## 〈目 次〉

머리말

1. 滿洲地域 阿片問題의 歷史的 背景
2. 滿洲國 수립 초기 阿片專賣制度의 創設
3. 阿片專賣制度의 實施
4. 中日戰爭 발발과 「阿片廢除新禁十個年計劃」으로의 轉換
5. 日本의 滿洲支配와 阿片政策의 性格

맺음말

## 머리말

만주사변이후 만주지역은 일본에게 있어 총력전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서 중시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소련과의 전쟁 준비를 위한 기지로서 중시되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는 일본의 총력 전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특히 일본에 대한 資源供給地로서 중시되었다.

한편 만주지역은 淸末이래 아편의 유입으로 아편흡연이 만연된 곳이었다. 중국이 영국과의 阿片戰爭에서 패한 이래 본토에서의 잇따른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 속에서 러시아세력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만주지역을 漢人에게 개방하자 본토의 아편 흡연습관이 漢人의 이주와 함께 만주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청조와 영국간의 「中英禁煙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청말, 民國초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을 포함하여 금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袁世凱 사후 정치적 혼란으로 다시 퇴보하였다. 그후 1928년 북벌의 완성으로 국민정부에 의해 다시 추진되었지만 중앙

---

\* 건국대학교 강사 (중국현대사)

행정력의 약화로 금연정책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1894년 淸日戰爭으로 臺灣을 식민지화한 이래 아편 흡연인구가 많은 식민지역에서 아편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전매수입을 획득하였다. 다만 지배초기 일본은 아편근절이라는 명목으로 漸禁主義에 근거한 아편 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sup>1)</sup> 그리고 이러한 아편 전매제도는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에게 조차된 關東州와<sup>2)</sup> 滿洲事變을 통해 일본 關東軍에 의해 수립된 滿洲國에서도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일본은 만주지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여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서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단순히 아편의 만연을 조장하여 재원획득만을 꾀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식민지 아편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편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아편정책의 관심이 阿片收入問題와 아편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했으나 여부에 주로 집중되었다. 식민지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당국은 만주지역의 아편흡연을 방임함으로써 전매제도를 통한 재원확보와 항진력 약화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3)</sup> 즉 지금까지의 아편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편 자체 또는 금연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만주국의 아편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식민지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이 어떠한 배경이나 의도에서 추진되었으며, 아편정책이 일본의 만주 지배정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시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만주국의 아편정책 연구는 총력전체제 준비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서 중시된 식민지역 지배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만주지역 아편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만주건국 초기의 아편전매제도 창설과 실시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아편문제의 만연 정도와 이에 대해 기존의

1) 劉明修, 『臺灣統治と阿片問題』(東京: 山川出版社, 1983), pp.104-109.

2) 大井靜雄, 『阿片事件の真相』, 岡田芳政 外編, 『續 現代史資料(12) 阿片問題』(東京: みすず書房, 1986), p.212.

3) 江口圭一, 『日中アヘン戦争』(東京: 岩波書店, 1988), p.207.

이 지역 지배자들이 아편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같은 지역을 식민지화 한 일본이 건국초기 아편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중일전쟁 발발후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주지역이 대륙침략을 목표로 일본의 총력전준비를 위한 기지로서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민지 만주지역의 지배정책과 관련하여 아편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 검토를 통해 만주국에서 시행된 아편정책이 일본의 만주지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에서 시행되었으며 또한 지배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만주지역 아편문제의 역사적 배경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 점령하에 편입된 만주지역, 즉 중국의 東三省 지역의 아편사용 시기는 대체로 1860년 이후로 추정된다. 만주지역의 아편판매 및 흡연습관을 전해주는 정확한 사료는 아직 없다. 그러나 『滿洲通誌』를 통해 살펴보면 동삼성, 즉 만주에서의 아편은 대략 1860년(咸豐末年) 이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sup>

그런데 만주국에 속해있던 熱河地域의 아편역사는 청조의 離宮이 이 지역에 있었던 관계로 이보다 약간 앞선다. 즉 당시 청조정의 관리들은 이미 아편흡연의 습관에 상당히 젖어있어 이들이 康熙연간에 조성된 청조의 이궁이 있는 열하지역을 왕래하면서 열하지역에 아편을 전하였던 것이다.<sup>5)</sup> 청조는 1729년(雍正7년)에 이미 아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편의 판매와 煙館의 설치운영을 금하는 禁煙令을 반포하였다. 1813년(嘉慶18년)에는 「嚴禁吸食條例」를 정해 관리들의 아편흡연을 엄금하려고 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볼 때 열하아편이 동삼성지역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4) 隱岐猛男, 「滿洲に於ける阿片類」, 『滿鐵調査月報』第12卷第12號(1932.12), pp.1-2.

5) 片岡滿, 「熱河に於ける罌粟の耕種概要」(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pp.4-5;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査會, 1935), p.33.

6) 于恩德, 「中國禁煙法令變遷史」(影印本, 臺北: 文海出版社, 1973), p.16, pp.25-26.

있다.

이러한 만주지역의 아편재배는 漢人の 만주이주와 크게 연관을 갖고 증가해 왔다. 즉 1840년에 발생했던 청조와 영국간의 아편전쟁과 연이어 발생했던 太平天國運動 등으로 중국 본토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래되었다. 또한 1923년(道光3년)부터 光緒年間に 直隸, 山東, 河北 3성에 발생했던 재난으로 농업경제가 크게 파괴됨으로써 많은 유민들이 발생하여 만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편전쟁 이후 러시아세력의 남하가 계속되자 청조는 1851년(咸豐元年)부터 1879년(光緒5년)시기에 제한적으로 만주지역을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광서6년)부터 1891년(宣統3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오히려 만주 전역을 개방하여 한인들의 개간을 장려하게 되었다.<sup>7)</sup> 따라서 중국 본토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과 청조 封禁政策의 개방으로 한인이 대거 만주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들은 곧 중국 본토의 아편 흡연습관을 함께 지니고 이주하였던 것이다.<sup>8)</sup>

한편 아편은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가 용이했고 경제성이 컸기 때문에 쉽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중국 본토의 금연령 시행으로 비교적 토질이 좋지 않은 산간지역에서 아편의 재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편의 경제성이 타농작물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에 산간벽지로부터 점차 평지로까지 퍼지게 되었다.<sup>9)</sup> 특히 아편전쟁 패배이후 외국아편의 수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조도 課稅方針으로 선회하자 同治·光緒年間에는 만주 및 열하 도처에까지 아편의 재배가 성행함으로써 아편 흡연의 풍습은 전 만주에 퍼지게 되었다.<sup>10)</sup>

아편이 전국적으로 만연된 가운데 1907년 청조와 영국이 「中英禁煙條約」을 체결하여 금연에 노력한 결과 民國 성립이전까지 만주를 포함한 중국 각지에서 일정정도의 금연성고가 거두어졌다. 당시 중국내에서는 청일전쟁에서

7) 許淑明, 『清代東北地區土地開發史略』, 馬汝駟·馬大正 主編, 『清代邊疆開發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pp.108-112.

8) 馬福誠, 『阿片東漸史』(新京: 禁煙總局, 1941), p.212.

9) 馬福誠, 앞의 책, p.212; 天野元之助, 『中國農業の地域的展開』(東京: 龍溪書舎, 1979), 129.

10) 『阿片專賣制度의 現狀』, p.33; 于恩德, 앞의 책, p.89, p.108, p.113.

의 패배와 光緒新政의 실패로 지식층 사이에 亡國危機論이 대두되었고 또한 국제적으로 영국의 아편무역에 비난여론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은 아편무역이 자국의 국익에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조와 禁煙條約을 체결하여 10년내에 중국에 대한 아편수출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결의하였다.<sup>11)</sup> 청조는 양귀비의 재배, 아편의 흡연을 금하면서도 아편세수의 재원적 역할을 간과할 수 없어 과세방법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영 금연조약」이 체결된 이후 아편세수를 지속하고서는 도저히 아편의 해독을 근절시킬 수 없음을 각성하고 아편세수 포기쪽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1911년(宣統3년)에 奉天, 吉林, 黑龍江, 山西, 四川 등 5성은 아편의 재배가 이미 금지되었다고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辛亥革命 직전 청조의 금연노력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sup>12)</sup>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건국되자 民國정부도 청조의 금연정책을 계승하여 이를 시행하였지만 각지에 軍閥勢力이 대두되면서 다시 혼란에 빠졌다. 민국이 성립한 후에도 아편금지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만주지역에서도 양귀비의 재배 등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sup>13)</sup> 그러나 袁世凱가 칭제하면서 군벌할거의 형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이후 계속된 중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법령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군벌의 이권쟁탈전이 전개되자 그들은 무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편을 장려하였고 이를 통한 재원마련에 열중하였다. 1925년 가을까지의 中華民國拒毒會議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각성 가운데 봉천과 흑룡강성은 지방관청의 강압에 의해 아편이 재배된 지역이며 길림성은 아편의 재배가 금지된 지역으로 되어있다.<sup>14)</sup> 따라서 만주지역에서도 대체로 군벌시대가 전개되면서 아편이 지방정권에 의해 다시 재배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에 해당되는 지역 가운데 아편을 가장 먼저 軍의 財源으로서 공개

11) 于恩德, 앞의 책, pp.115-122; R.K.Newman, "India and the Anglo-Chinese Opium Agreements, 1907-1914," *Modern Asian Studies*, 23-3(1989), pp.529-532.

12) 于恩德, 앞의 책, p.144.

13)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 p.34; 于恩德, 앞의 책, p.177.

14) 于恩德, 앞의 책, pp.177-179.

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은 熱河였다. 1921년 중앙정부로부터 열하지역에 임명되었던 姜桂題督軍은 아편을 軍費 源출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금연구령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아편에 대해 세를 징수하고 양귀비의 재배를 장려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비밀리에 행해졌던 양귀비 재배에 대한 징세가 공공연히 행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후 中央派이건 奉天派이건 상관없이 모든 督軍들은 아편 생산세를 유일한 재원으로 여겨 과세를 계속함으로써 열하아편은 더욱 증산되어 만주 및 화북에서 커다란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sup>15)</sup>

특히 봉천파의 湯玉麟시대에 열하지역의 아편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姜桂題시대에는 양귀비 재배면적이 5천 頃(약 3만 정보)이던 것이 탕옥린 시대에는 8천 20경에 달하였다. 그리고 양귀비에 대한 재배과세액도 6元(1921년)에서 9원(1929년)으로 인상되었으며, 경작에 종사하는 인구도 열하성민의 약 1/3을 점하였다. 따라서 아편의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합한다면 탕옥린시대 열하성의 경제는 아편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16)</sup>

한편 張作霖이 장악하고 있던 만주지역은 1926년 북경으로의 진출이후 재정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무렵부터 아편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었다. 1918년에 東三省巡閱使로 취임하면서 만주지역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한 장작림은 초기에는 아편과세를 통한 군비조달을 시행하지 않았었다. 또한 1922년 이래 수차례 걸친 군벌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열하를 제외하고는 걸으로 드러내놓고 아편에 대해 과세를 행하지 않았다.<sup>17)</sup> 그러나 제2차 直奉戰爭 승리후 1926년 장작림의 북경진출, 大元帥 취임이 행해지자 과도한 군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더욱이 奉票의 폭락으로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18)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27년 1월 아편에 대해 「奉天省禁煙規定」이 설치되어 禁煙罰款이라는 명목하에 아편의 재배, 매매, 흡연에 대한 과세가 공공연

15)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 p.35.

16) 馬樞誠, 앞의 책, p.214; 天野元之助, 앞의 책, pp.130-132.

17) 常城 外著, 『現代東北史』(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6), p.13;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 p.35.

18) 常城 外著, 앞의 책, pp.56-58; 龔蛟猛男, 앞의 논문, p.3;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 p.36; Hsi-sheng Ch'i 著, 楊雲若-蕭延中 譯, 『中國的軍閥政治(1916-1928)』(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p.156.

히 행해지기 시작하였다.<sup>19)</sup>

이 규정은 금연주의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과세를 목적으로 하다가 얼마가지 않아 폐지되었다. 이 규정은 금연기한을 정해 근절을 표면상 내세웠지만 금연기간동안 아편의 생산, 소비,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없이 고율의 벌금만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재원마련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나 본 규정도 아편류 영업자들의 반대와 萬國拒土會 혹은 中華國民拒毒會 등 금연단체들의 비난, 그리고 단속 담당자의 부패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해 2월에 폐지되기에 이르렀다.<sup>20)</sup>

한편 1928년 12월에 동북정권을 대표하는 張學良이 국민정부와 제휴함으로써 만주지역의 아편정책도 국민정부의 법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1927년 11월에 고율과세를 통한 아편소비 견제라는 「禁煙暫行章程」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中華國民拒毒會 및 기타 민간 금연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이 정책은 폐기되었다.<sup>21)</sup> 곧 이어 1928년 7월에 禁煙委員會 및 「禁煙會議組織條例」가 반포되고, 그해 9월에 「禁煙法」 및 「禁煙法施行細則」이 반포되었다. 새로이 孫文의 禁煙遺訓에 근거한 이 금연법에서는 1929년 3월 1일 전에 완전히 아편 흡연을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제국주의와 군벌과 연관된 중국 국내정치의 불안, 탐관오리들의 횡포 등으로 여전히 아편의 밀매는 성행하였다. 특히 금연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1928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흑룡강, 길림성을 포함한 전국 15개성의 아편 위반사례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아편 해독이 만주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얼마나 만연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금연집행 실상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sup>23)</sup>

19) 隱岐猛男, 앞의 논문, p.3; 『滿洲國專賣制度の現状』, p.36.

20) 隱岐猛男, 앞의 논문, pp.4-7.

21) 于恩德, 앞의 책, pp.190-191.

22) 于恩德, 앞의 책, pp.202-204.

23) 앞의 책, pp.217-219.

요컨대 일본의 만주침략 이전 이 지역의 아편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하였으며, 또한 아편의 財源의 역할이 그 사회적 만연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즉 1907년 「중영금연조약」의 성립을 계기로 어느정도 금연효과를 보이던 이 지역도 民國시대 군벌이 등장하면서 군비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책으로 아편이 다시 장려되었다. 그후 국민정부는 북벌성공이후 민간단체 주도하에 확산된 금연운동을 계기로 실질적인 금연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불안 등으로 여전히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만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2. 만주국 수립 초기 아편전매제도의 창설

일본은 1905년 이래 滿洲 및 蒙古지역을 분할하는 協定과 密約을 제정러시아와 여러차례 체결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당시 일본은 滿蒙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목표로 이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대공황기를 이용하여 만주 지역 지배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만주지역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 일본 상품의 수출입시장 및 중요자원의 공급지로서, 그리고 일본 자본수출의 대상으로서 중시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 과잉인구의 흡수지로서 만주지역의 확보가 긴요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일본 육군의 최대가상적국인 소련에 대한 군사작전수행과 朝鮮支配를 유지하기 위해 중시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 관동군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지역을 확보하고 다음해 만주국을 수립하였던 것이다.<sup>24)</sup>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이 지역에서 대만, 관동주 등 식민지역에서 행하였던 점금주의에 근거한 아편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만주국 아편법 공포에 임해 발표된 國務總理布告를 통해 살펴보면,

24) 歷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1) 滿洲事變』(東京: 青木書店, 1971), pp. 230-234; 江口圭一, 『十五年戰爭小史』(東京: 青木書店, 1966), pp.15-16.

아편의 흡연은 그 유래한 바가 오래되고, 일상습관에 침투한 바가 깊으며 안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탕진시키고, 밖으로는 열강의 모욕을 입고 있다. … 이 오래된 폐단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漸禁主義에 근거한 중독자 漸減方策을 채택하여, 일반에는 흡연을 엄금하고, 오직 이미 중독에 빠진 자에 한해 치료상 흡연을 인정함과 함께 치료기관을 특설하여 중독자의 치료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화 기타 사회시설을 통해 인민의 자각을 환기시켜 새로운 중독자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弊風을 점차 감소시켜 근절을 도모해야 한다. …

大同元年(1932年) 11월 30일 국무총리 鄭孝胥<sup>25)</sup>

라고 되어있다. 즉 일본은 만주국에서도 일반에게는 아편의 흡연을 엄금하고 오직 기존의 중독자에게만 치료를 위해 정부가 아편을 전매 공급한다는 소위 漸禁主義에 근거한 아편 전매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日滿實業協會에서 편한 『滿洲國阿片制度と阿片의 概念』에서는 점금주의 채택 배경에 대해

만주국은 광대한 지역을 소유하였고 민중 역시 뿌리가 깊은 흡연의 습관을 갖고 있으며, 아편 해독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고 더욱이 행정력도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헛되이 이상만을 좇아 현존 중독자의 구제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간단히 斷禁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효과가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sup>26)</sup>

라고 하였다. 즉 만주국은 지역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아편의 흡연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강력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거에 斷禁(嚴禁)을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편엄금을 시행하지 않고 점금을 채택한 배경에는 엄금정책 시행에 따른 財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

25) 禁煙總局, 『禁煙關係法令集』(新京: 1941), pp.1-2.

26) 日滿實業協會, 『滿洲國阿片制度と阿片의 概念』(1936), pp.2-3.

직후 식민지화한 대만에서 엄금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개사단 이상의 군대가 수년에 걸쳐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만과 비교하여 훨씬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며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만주국에서 엄금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비와 동원 인원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었다.<sup>27)</sup> 즉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아편 밀매가 보다 용이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만주지역에서 아편에 대해 엄금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의 지출과 경찰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더구나 전국 당시 공장설비 등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투여와 官營化事業의 추진 등으로 다액의 경비가 지출되어 정부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sup>28)</sup> 이러한 여건에서 엄금정책의 시행은 경찰력과 경비의 소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아편 전매수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점감방법을 명분으로 한 아편 전매제도가 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만주국 건국초기의 세입 6,400만 엔 가운데 아편전매수입이 1,000만 엔으로 예산되었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또한 만주지역 아편 전매제도의 시행은 일본의 이 지역 지배력 확립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당시 만주지역에서 많은 아편들이 匪賊 혹은 비적의 보호하에 생산되어 그들의 유력한 재원이 되고 있었다.<sup>30)</sup> 여기서 비적이란 일본에 반대하는 모든 항일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동군도 비적이 아편을 재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재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치안 대책」으로 만주국 정부에 아편법의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였다.<sup>31)</sup> 이를 통해 볼 때 만주지역의 아편 전매제도는 지배력 확립이라는 또다른 의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만주국은 1932년 11월 30일 「아편법」과 「아편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아편 전매제도를 추진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27) 日滿實業協會, 「滿洲國阿片制度と阿片の概念」(1936), 岡田芳政 等編, 『續 現代史資料(12) 阿片問題』(東京: みすず書房, 1986), p.224.

28)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新京: 1938), p.2.

29) 『樞東國際軍事裁判速記錄(1)』(東京: 雄松堂書店, 1968), p.435.

30)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2.

31)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東京: 1971), p.1218.

<아편법>

제1조 본법에서 아편이라는 것은 生阿片, 阿片煙膏 및 藥用阿片을 말한다.

제2조 아편은 흡연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가 아닌 아편중독자로서 치료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3조 아편의 판매 및 아편연고, 약용아편의 제조는 정부에서 행한다. 단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아편연고를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 아편 또는 아편흡연기구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한 것 이외에 그것의 제조, 매매, 수수, 소유 또는 소지를 할 수 없다.

...

2. 아편소매인이 아편연고를 제조하고 또는 생아편, 아편연고 혹은 아편 흡연기구를 매매, 수수, 소유 또는 소지할 때

3.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아편흡연자가 아편연고를 제조하고 또는 생아편, 아편연고 혹은 아편흡연기구를 양수 또는 그것을 소유하고 혹은 소지할 때

제10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양귀비재배자는 생산된 생아편을 정부에 납부 해야한다. 단 당분간 정부가 지정한 아편수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아편수매인은 수매된 생아편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 32)

<아편법시행령>

...

제3조 아편흡연자는 아편소매인 이외자로부터 아편 또는 아편흡연기구를 양수받을 수 없다.

제4조 생아편, 아편연고 또는 아편흡연기구는 아편도매인에 의해 아편소매인에게, 아편소매인에 의해 아편흡연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5조 아편도매인은 전매공서장, 아편소매인은 관할 성장이 지정한

32) 藤岐猛男, 앞의 논문, pp.17-20.

다.

...

제12조 양귀비재배구역 및 면적은 매년 전매공서장이 정한다.

제13조 양귀비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매년 관할 성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변경 또는 재배를 폐지하고자할 때도 역시 동일하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재배장소, 면적

제16조 양귀비재배자는 생산된 생아편을 전매공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제출하거나 아편수매인에게 판매해야 한다.

제18조 아편수매인은 수매된 생아편을 전매공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앞 조문의 납비아편은 전매공서에서 그것을 감별하고 그 품위에 따라 보상금을 교부한다.

제26조 아편수매인, 아편도매인 및 아편소매인이 지정을 받을 때는 성장 또는 전매공서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33)

라고 되어있다. 즉 아편법 및 그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보면 양귀비의 재배는 허가제로 하고, 생산된 아편은 직접 혹은 수매인을 통해 모두 정부에 납입하며 일반에게는 아편의 흡연을 엄금하나 중독에 빠진 자에 한해 치료상 흡연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치료상에 필요한 아편은 모두 정부의 전매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만주국은 專賣公署를 설치하여 아편에 관한 사무 일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래 표에 나타난 이 시기 기획 결정된 대략의 시행목표에 의하면 제도 실시 초기단계에는 대체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 의한 전매보다는 간접적인 전매를 계획하고 있었다. 즉 아래 표를 보면 앞의 인용된 아편법과 시행령은 아편제도 완성을 위한 목표의 제1단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편 전매제도가 정부에 의한 완전 관영의 형식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인들을 전매제도 속에 흡수시켜 시행한 준아편전매제도의 형

33) 藤岐猛男, 앞의 논문, pp.20-22.

식을 띤 전매제도였다.

〈표〉 아편제도 완성을 위한 시행목표 34)

아편제도 완성을 위한 시행목표	아편제도 실시순서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1. 아편전매관서의 설치	본서, 지서, 분서의 설치	정비충실	동좌
2. 원료아편의 획득	지역을 지정하고 생산량을 한정한다	재배, 수납의 정비	동좌
3. 아편연고의 제조	시험적 연고판매	정비충실	동좌
4. 아편흡연자의 단속	단순등록	인허가등록	정비충실
5. 아편의 공급	도매인, 소매인의 지정	관영을 위해 도매인폐지	관영을 위해 소매인폐지
6. 밀거래의 단속	일반에게 장려제도 설치, 지방관헌협력, 재배지박멸	정비충실	동좌
7. 아편흡연기구 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판매를 특허제한 한다	정비충실	동좌
8. 阿片煙灰의 사용금지			정부회수

특히 생산자로부터의 아편 수매와 소비자로의 판매에 있어 완전한 전매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에서의 아편 수매방법은 아편수매인을 거쳐서 수매하거나 정부 직접수매라는 두가지 방법을 규정하였다. 아편 판매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 관영으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 중간에 도매인과 소매인을 두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전매 초기라는 상황과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상거래를 어느정도 용인하지 않고서는 전매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煙膏 제조문제를 보아도 직접전매와는 거리가 있다. 만주국은 두가지의 아편 판매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첫째는 전매서로부터 도매인을 거쳐 소

34)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p.2-3.

매인에게 생아편을 판매하고, 소매인은 이들 생아편을 가공하여 연고로 제조,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또다른 경우는 소매인이 생아편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연고를 제조하여 흡연케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가족내 다른 구성원에게 아편의 흡연이 전염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편근절을 목표로 한 전매제 실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여하튼 만주국은 위의 법과 시행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완전한 전매제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아편의 수납과 판매계통을 완성하였다. 즉 楊貴妃栽培者--> (收買人-->)專賣署--> 阿片都賣人--> 阿片小賣人--> 阿片吸煙者라는 준아편전매제도의 형식을 띤 아편 전매제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이 공포한 아편법에는 아편 근절에 오히려 역행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저 아편 근절에 대한 시기설정을 들 수 있다. 비록 앞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별 시행목표를 작성하였지만 단계별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당시 만주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중국 국민정부의 1927년 금연조례에서는 3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하여 아편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며, 1928년에 다시 발표한 아편금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해 3월 1일을 기한으로 한 명확한 시기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대만의 아편정책을 모방하여 공포한 만주국의 아편법에서는 금연시기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군벌의 재원확보라는 아편정책과 다름없이 근절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고 있었다.

또한 아편법 위반에 대한 처벌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정부의 아편법률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설정하였다. 35) 이에 비해 만주국의 아편법에는 아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국민정부에 비해 미약할 뿐 아니라 징역과 벌금을 병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위주의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마약류 단속에 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주지역에는 이미 마약류 중독자가 상당히 존재해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

35) 賴淑卿 編著, 『國民政府六年禁煙計劃及其成效』(臺灣: 國史館, 1986), pp.371-372, pp.378-379.

렸다.<sup>36)</sup> 즉 값비싼 아편을 구할 능력이 없는 중독자는 마약류로 이행하였으므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단속노력 없이는 금연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아편법에는 마약류에 대한 근절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sup>37)</sup>

요컨대 만주국 건국 초기 일본이 이 지역에서 시행한 아편 전매제도는 당시 만주지역에서의 취약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구조와 맞물려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주지역에서도 대만, 관동주와 같이 엄금주의가 시행되지 않고 점금주의에 근거한 아편 전매제도가 시행된 것은 엄금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문제와 항일세력의 재원근절이라는 문제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으로서는 만주지역에서 엄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비해 점금주의를 시행할 경우 항일세력의 재원이 되고 있는 밀작 및 밀배를 단속하여 항일세력의 재원을 근절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식민지 지배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점금주의에 입각한 아편정책이 채택된 것이었다.

### 3. 아편전매제도의 실시

만주국의 전매제도는 1932년 준비기간을 거쳐 1933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매제도의 실시에 따라 가장 중요한 원료아편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자급자족방침을 정하였다. 판매예상량을 기초로 소요재배면적을 한정하여 적당한 지역을 지정하고 생산된 아편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편전매실시 첫해인 1933년 재배에 관해 專賣公署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해의 수납예상량을 약 660만 량(1량은 50g)으로 보고, 열하성 및 홍안성에서 주요부분을 공급받고, 나머지를 길림성에서 구할 계획을 세웠다.<sup>38)</sup> 이에 따라 이해 이들 세지역에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140頃(1

36) 宮島幹之助, 「滿洲의 阿片と 麻藥」, 岡田芳政 外編, 『續 現代史資料(12) 阿片問題』(東京: みすず書房, 1986), p.110.

37) 隱岐猛男, 앞의 논문, p.24.

頃=100畝, 1畝=6.1아르)의 재배면적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령이 철저히 못했던 원인과 치안문제로 지정지역 이외에 밀작지역이 많았다.<sup>39)</sup>

〈표2〉 연도별 양귀비 생산, 수납예상량, 수납실적 및 동비용  
(1량은 50g) 40)

연도	지정면적 (頃)	생산예상량 (A: 천량)	수납예상량 (B: 천량)	수납실적 (C: 천량)	Bx100/A (%)	Cx100/A (%)	Cx100/B (%)
1933	9,140	18,280	6,602	2,430	36	13	37
1934	10,815	21,630	6,840	6,613	32	31	97
1935	6,900	13,800	7,200	7,601	52	55	106
1936	8,800	17,600	10,800	10,308	61	59	95
1937	10,300	20,600	13,500	6,552	66	32	49
1938	7,200	14,400					
1939	7,100	14,200					
1940	5,600	11,200					
1941	5,000	10,000					
1942	3,600	7,200					

\* 1933-1937년까지의 지정면적, 수납예상량, 수납실적은 專賣總局에서 발표한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1938-1942년까지의 지정면적은 滿洲帝國政府에서 편한 『滿洲建國十年史』에서 인용한 수치임. 생산예상량은 1무당 평균 20량으로 계산한 것임.

양귀비의 밀작은 지정지역은 물론 봉천, 흑룡강 등 금지구역에서도 성행하여 만주 도처에 밀작이 행해졌다. 이와 같이 양귀비의 밀작이 행해진 원인을 관찰하면, 우선 만주국의 새로운 아편 판매제가 실시되지 불과 수개월이

38)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1935), p.70.

39)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9.

40)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復刻本, 東京: 原書房, 1969), pp.275-276;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新京: 1938), p.21;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新京: 1938), pp.21-22; 江口圭一은 『日中アヘン戰爭』에서 戰後 만주국사편찬간행회에서 편한 『滿洲國史各論』(p.1231)에 근거하여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만주국 아편수납실적에 관한 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치 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주국사각론』에 나타난 아편수납실적 및 수납율은 만주국의 연도별 양귀비재배면적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양귀비재배면적은 일본 패전이전 만주국의 아편전매 담당부서인 전매총국과 만주국에서 편한 통계치와 커다란 차이(대체로 『만주국사각론』에 나타난 재배면적이 작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수치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본표 작성에 있어 전매총국 및 만주국에서 공표하지 않은 통계수치는 이용하지 않았다.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법령이 아직 철폐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33년의 경우 북만지역이 수매를 당한 다음해였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이 하락한 점과 만주사변 이후 계속된 匪賊의 피해 등으로 일반농민들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따라서 종래 양귀비재배로 생계를 꾸려온 지역은 물론 기타 지방에서도 경작상 유리한 양귀비재배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전 만주에 밀착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양귀비는 타농작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법령포고로서 재배를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상황에서 전매공서는 재배 지정지역에 대한 수매에 적극적으로었는데 특히 이해 재배 지정지역 가운데 가장 수매에 힘을 쏟은 지역은 열하성이었다. 열하성은 아편의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興安, 吉林 두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수매에 실패할 경우 그 영향은 막대하였다. 열하전매서에서는 9월 중순부터 직접수매에 착수하였으나 종전의 아편상인과 농민과의 결합관계가 깊어 일반농민은 전매공서원에게 매각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로써 직접수매는 실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종전 열하지역에서 아편수매에 종사했던 아편상인을 통할하여 하나의 조합을 조직토록 하고 이 조합으로 하여금 수매업무를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아편상인 17명에게 명해 자본금 100만 엔의 大滿公司를 창설토록 하였다(1933년 4월 20일 설립). 이를 통해 4월 중순부터 大滿公司에 의해 수매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수매기를 지났기 때문에 수납예상량의 37%라는 낮은 실적으로 1933년의 수납을 마감하였다.<sup>42)</sup>

1934년에는 1933년도의 실패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배구역 및 면적을 서둘러 1933년 12월 18일에 공포하였다. 전매공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해의 수납필요량을 684만 량으로 하고 지정지역에 熱河, 興安西省, 吉林省 외에 작년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가 많이 되었던 奉天省의 일부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약 100만 무 정도의 재배면적을 지

41)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 『滿洲國專賣制度의 現狀』, pp.74-77.

42) 앞의 책, pp.91-92.

정하였다.<sup>43)</sup>

이해에는 대체로 예상 수납량을 거의 달성하였는데, 그것은 이해의 경우 파중전부터 밀작에 관해 엄한 단속공작이 진행되었고, 또한 保甲制度에 의한 연좌처벌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개화기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순회 감시하고 밀작지에 포탄을 투하하는 등 상당히 위협적인 단속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밀작이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매제도에 있어서도 間島의 4현을 제외한 지역 모두 수매인을 이용하는 간접수납방법을 채택하여 예상량에 가까운 수납을 이룰 수 있었다.<sup>44)</sup>

특히 열하지역에서 활동했던 大滿公司라는 수매조직이 1934년 예상량의 수납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대만공사에 대해서는 만주국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다. 즉 이해부터 직접수매에서 간접수매로 전환된 것은 전매제도로 볼 때 실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간에 착취자를 둬으로써 생산자와 전매서 모두에게 불리하며 어떤 취급관계자가 많으면 그만큼 밀매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밀매단속에도 이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만공사에 참가하지 않은 아편상인과 대만공사 사이의 충돌 야기문제, 대만공사 상인이 수매에 있어 공정가격 이하로 구입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가중시킬 염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하지역에는 간접수매 이외에 적당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大滿公司라는 수매인조직을 통한 아편수매가 시행되었다.<sup>45)</sup>

1935년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지정지역이 열하를 비롯 興安西, 錦州, 安東, 間島, 濱江, 三江 각성에 걸쳐 69만무가 지정되었는데 대체로 1934년도의 지정지역을 답습한 것이었다. 당초 만주국의 지배력 불안으로 집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수납시기에 이르러 지배력이 회복되어 약 760만 량을 수납함으로써 예상량을 약간 초과하였다.<sup>46)</sup> 또한 이해에도 전년도와 같이 전면적으로 간접수납을 실시한 것이 예상수납량을 초과하여 수납

43) 앞의 책, pp.80-82.

44)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20.

45)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 『滿洲國專賣制度の現狀』, pp.98-99.

46)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9.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다.<sup>47)</sup>

1936년에는 양귀비 재배지역이 감소하여 열하성과 흥안서성 외에 삼강성과 빈강성의 일부지역만이 포함되어 88만무가 지정되었다. 이해에도 열하지역의 한 소구역에 대해 실험적으로 직접수납방식을 시행한 외에 계속해서 수매인제도를 답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강성방면의 지배력 불안문제와 작병불량 등으로 東土(일반적으로 北滿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일컫음)의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 열하 북부지방의 풍작으로 그것을 보충하였지만 예상수납량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수납을 마감하였다.<sup>48)</sup>

재배지역에 있어 전년도와 같은 경우는 열하성과 흥안서성 외에도 여러지역에 걸쳐 지정되었는데 이해의 경우는 재배지역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것은 만주국이 추진했던 「治安工作」과 관계가 깊다고 보여진다. 즉 1935년 9월 중순 관동군을 중심으로 日滿軍警 및 관계기관이 일체가 되어 「秋期治安肅正工作」이 결행되었다. 여기서 빈강, 길림, 간도, 봉천, 안동 5성이 중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이 「치안공작」에는 무력토벌인 「治標工作」과 항일세력의 생활근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治本工作」이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치본공작」의 하나가 아편밀착 단속을 통한 항일세력의 재원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1936년도에 봉천, 길림, 간도, 빈강, 삼강성의 여러 현들이 아편밀착재배 「特別清掃地域」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강화되었던 것이다.<sup>49)</sup> 그것과 관련하여 이해의 재배구역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1937년의 경우 양귀비 지정지역은 전년도를 답습하면서 재배면적은 20만 무 정도 증가한 100만 무 정도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해에는 동서 양 지정지역 모두 작병이 불량하였다. 특히 삼강성 방면의 지배력이 극도로 불안하여 동토의 수납량은 매우 저조하였다. 西土(일반적으로 熱河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일컫음) 역시 작병불량과 함께 중일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이해의

47)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20.

48)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21.

49) 加藤豊隆, 『滿洲國警察小史 (第一篇)滿洲國權力の實態について』(松山: 元在外公務員援護會, 1978), pp.97-105; 治安部警務司, 『滿洲國警察史』(復刻本, 松山: 1976), p.393.

수납실적은 예상량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수납방식도 열하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매인에 의한 간접수매방식이 채택되었다.<sup>50)</sup>

일정한 보상금을 생산자에게 지불하고 수납된 아편은 규격아편으로 제조되어 도매인,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전매제도 창설 당초 소비자에게 판매된 아편은 수납 또는 몰수된 생아편으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채 공급되었다. 따라서 품질이 통일되지 않고 함유수분량도 일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매품의 성가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밀매아편과의 판별을 곤란하게 하여 판매정책상 또는 단속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판매하는 生阿片에 대한 규격통일을 기도하여 1933년 8월에 봉천전매서 한쪽에 시험실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규격 百兩包(1량 36g)의 시험제조에 착수하였다. 더욱이 1934년부터는 1량포(36g)의 제조에도 착수하여 제조능력을 확대시켰다. 1936년부터는 도량형의 개정과 함께 규격품도 50량포, 반량포의 두종류를 제조하였다. 더욱이 현안이었던 연고 제조문제에서도 1940년부터 전 만주에 아편판매를 연고로 통일할 것을 계획하고 1936년 7월부터 연고제조를 개시하여 전국에 대한 실험 판매에 들어갔다.<sup>51)</sup>

이와 같이 제조된 전매아편은 1936년 3월 말일까지는 당초 아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매서로부터 도매인, 소매인을 거쳐 흡연증을 소지한 중독자에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1936년 3월 말일을 기해 중간기구인 도매인제도(전국 10인)를 폐지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약 100개소의 전매관서에서 직접 소매인에게 공급하였다.<sup>52)</sup>

소매인의 경우는 관할 성장이 지정하였다. 당초 600명이었으나 벽지에 대한 전매아편의 보급과정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37년에는 2,000명에 달하였다. 이들에게는 이익의 독점방지, 단속의 편리 등을 고려하여 1인 1개소주의를 적용하였고 흡연설비(煙館)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규격아편, 官製煙膏, 自家製煙膏 및 아편흡연기구의 판매를 담당시켰다.<sup>53)</sup>

50)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21;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10.

51)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p.10-11;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p.26-27.

52) 專賣總局, 『滿洲國專賣概要』, p.23.

53)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40.

이러한 전매계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 아편수량은 만주지역내 추정 소비량과 비교하여 볼 때 중일전쟁 발발한 193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추정소비량에 대한 판매실적이 실시 초기에 비해 점차 증가하여 1937년도에 이르러 절반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전매아편의 판매실적이 추정소비량의 절반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절반정도는 밀매로 소비되고 있었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판매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서는 주된 것은 전매총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sup>54)</sup> 전매를 통한 아편판매가격과 밀매가격과의 차이가 좁아진 것, 그리고 지배상황의 호전으로 생각된다. 즉 만주국은 전매초기 새로운 중독자의 발생방지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양귀비재배의 억제와 타작물과의 균형상 정부의 아편수납가격은 낮은 가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기의 아편판매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은 지배력이 불안했던 원인도 있었지만 소비자는 전매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싼(1933년도 1량에 1엔의 차이가 발생) 밀매품을 선호했던 것이다.<sup>55)</sup> 따라서 1937년까지 점차 전매아편의 판매가 서서히 증가하게 된 것은 「치안강화」에 따른 지배력이 점차 확립되어 가는 배경과 함께 전매아편의 판매가격 인하로 밀매품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생김으로써 절반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표3〉 연도별 추정소비량에 대한 판매실적 및 비율<sup>56)</sup>

(단위는 兩, 1량은 50g)

연도	추정소비량	판매실적	동비율(%)
1932	13,500,000	241,978	1.8
1933	27,000,000	2,657,606	9.8
1934	27,000,000	5,915,149	21.9
1935	13,500,000	3,994,779	29.6
1936	27,000,000	10,096,125	37.4
1937	22,500,000	14,025,883	62.3

\* 1932년도와 1935년도는 그해의 반년분에 해당하는 수치임.

54) 專賣總局, 『滿洲國阿片專賣制度概要』, pp.6-7.

55)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7, p.49;

56)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38.

요컨대 만주국 건국후 이 지역에서 시행된 아편전매제도는 대대적인 「치안공작」과 아편에 대한 가격정책, 그리고 수매인조직 등을 활용함으로써 점차 밀매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편전매제도는 아편에 대한 유동적인 가격정책과 정부의 전매제도 속에 중간상인들을 개입시킴으로써 전매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만주건국후 중일전쟁 발발전까지 전매제도가 외견상 어느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실재상에 있어 전매제도 본래의 성과가 실현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 4. 중일전쟁 발발과 「阿片麻藥斷禁十個年計劃」으로의 전환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8월에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전환배경을 만주국 專賣總局에서 편한 『滿洲國專賣概要』를 통해 보면,

… 실시 초기 2년간은 참담한 실적 부진을 보였으나 전매관원, 군대 및 경찰관이 일체가 되어 시행함으로써 전 만주지역의 밀작양귀비에 대한 대소탕, 아편수납가격 및 판매가격의 조작, 기타 각종 악전고투를 겪으면서 점차 예정 성적을 거두어 작년(1937년)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성적에 보이는 숫자만을 보고 국가가 아편전매를 주로 財政目的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편제도 개혁의 주장이 크게 일어났다 … 아편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은 진실로 경축할 일이다. 이같이 관계기관의 신중한 심의 결과 작년(1937년) 8월 아래와 같이 煙政要綱을 채택하고 국무총리대신이 아래와 같은 포고를 발표하여 … 57)

라고 되어있다. 즉 만주국이 시행한 점금주의에 근거한 아편전매제도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제도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이 전환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총력전체제의 일환으로 만주지역에서 이해부터 시행되고 있던 만주산업개발계획과 깊은 연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패전후 만주국

57) 專賣總局, 『滿洲國專賣概要』(新京: 1938), p.14.

사편찬간행회에서 편한 『滿洲國史各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

만주국은 건국이래 5년여를 거쳐 국가의 기초가 공고히 되고  
 재건설도 제2단계에 들어갔으므로 아편단금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sup>58)</sup>

라고 되어있다. 즉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총력전체제의 구축을 지향하여 왔으며, 만주국의 건국을 주도했던 군부, 특히 관동군은 만주국을 일본의 총력전준비의 일환으로 자급자족적인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건국 직후부터 對소전 준비를 위한 제1단계 만주경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제2단계로서는 1936년 12월에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강요」가 결정되어 37년부터 41년까지 5년동안 25억 엔의 자금을 투입, 만주국의 광공업, 특히 군수공업의 기초를 이루는 철광, 석탄, 인조석유, 경금속공업의 비약적 확대를 기도하고, 더욱이 자동차, 항공기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 실시 제1년도인 1937년 도중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곧이어 「수정5개년계획」이 입안되어 만주 자체의 중공업건설 보다는 석탄, 철광 등 원재료의 대일공급지로서 중시되게 되었다.<sup>59)</sup> 이와 같은 산업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의 동원이 필수적인데 아편의 만연은 노동력 공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편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만주지역의 노동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만주국이 수립된 초기에는 전란으로 농지가 황폐해져 잉여노동력이 발생함으로써 노동력 공급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1933년 관동군의 제창으로 설립된 勞動統制委員會는 화북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여 국내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 도모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1935년 2월 26일 大東公司를

58)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1221.

59) 鈴木隆史, 『日本帝國主義と滿州(下)』(東京: 塙書房, 1992), pp.179-182; 小林英夫, 『總力戰體制と植民地』, 今井清一 編, 『體系日本現代史 第二卷 十五年戰爭と東アシア』(東京: 日本評論社, 1979), p.59, pp.69-73, p.81.

설립하여 화북 노동자의 입국제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37년부터 「산업개발5개년계획」의 실시 단계에 들어서자 노동력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해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전선이 확대되고 전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日滿을 일체로 하는 산업개발, 생산력증강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동수요에 대해 전쟁 발발 이후 화북노동자의 입국이 급격히 감소하여 노동력의 부족상태로 산업개발계획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론까지 대두되었다. 따라서 만주국은 중국노동자의 입국제한을 해제하고 적극적으로 화북노동자의 입국을 촉진하는 한편 만주국내 노동자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통제를 행하기 시작하였다.<sup>60)</sup>

이와 같이 국내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일전쟁 발발 직후 공포된 「아편마약단금십개년계획」의 수립은 노동력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인을 배경으로 1937년 10월 11일에 아래와 같은 「아편마약단금방책요강」을 결정하고 다음해 38년부터 10년내 아편중독자의 근절을 기하였다. 그 내용의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편마약단금방책요강>

##### 제1 방침

현행 아편 단금정책을 공고화하고 철저히 하며 새로운 중독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도모한다. 그리고 중독자, 특히 청소년자의 신속한 교정치료에 노력하며, 행정 가운데 경찰력의 침투에 수반하여 康德5년(1938년)이후 10개년 이내에 아편 흡연자의 근절을 기한다

##### 제2 요령

...

##### 제2 새로운 중독자 발생의 방지

- 2 아편흡연의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康德5년 1월 1일부터 만25세 이하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3 강덕5,6년 두 해에 걸쳐 현존 중독자의 행정조사를 행해 점차 전

60)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p.1154; 小林英夫, 『大東亞共榮團の形成と崩壊』(東京: 御茶の水書房, 1977), pp.283-285.

국적으로 중독자등록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수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흡연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3 아편중독자의 교정치료

5 아편흡연의 허가조건은 청장년자에 대해, 특히 엄격하고 그 단금을 신속히 하는 것으로 한다

...

7 현행 아편소매소(煙館 포함)에 대해 단속을 힘쓰고 강덕7년(1940년)말까지 전체를 공영으로 하고 명칭을 管煙所(가칭)로 개칭한다

8 아편중독자 및 마약중독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公營管煙所利益金으로 점차 치료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아편전매익금으로써 그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9 치료용 아편은 그것을 강덕6년 말까지 점차 煙膏로 통일하고 「모르핀」 함유량의 저하를 통해 중독정도의 완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煙灰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그것을 전매총국에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4 아편생산 및 수납제도의 확립

...

12 지정지역 생산아편에 대해 정부는 직접수납의 방법을 강구한다

...

제5 양귀비경작의 전환

15 아편단금정책의 진전에 수반하여 양귀비재배지 체감으로 생긴 농가생계의 급변을 피하게 하기 위해 양귀비경작의 전환에 관해 정부는 적당한 대용작물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그것의 지도 장려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상과 같이 만주국의 「아편마약단금정책」은 건국 초기의 아편법 및 그 시행령과는 달리 아편근절을 위한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정책의 전환과 노동력문제를 관련하여 볼 때 위의 단금정책요강의 진한 글씨부분들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중독자의 발생방지와 젊은층의

중독방지에 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만주국내 노동력 공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며 아편단금정책이 노동력문제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이 전환된 아편정책은 10년이라는 명확한 금연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중독자의 발생방지와 기존 중독자의 관리 치료를 통한 아편근절 의지를 공포하였다. 또한 생산된 아편의 수납 및 판매도 기존의 중간인을 배제함으로써 진정한 전매제로 이행하고자 함과 동시에 아편단금정책의 진전에 따라 양귀비 재배지역도 축소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에 노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한편 새로운 아편정책에서는 건국 초기의 아편법과는 달리 마약법을 제정하여 단금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노동력문제와 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만주에서는 만주국 건국 전부터 아편과 함께 마약의 밀조, 밀수, 밀매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만주국은 1937년 7월 22일에 마약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sup>61)</sup> 일반적으로 아편을 단속하거나 혹은 아편에 대한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수요자는 반드시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으로 옮겨가게 된다. 만주에서도 이전부터 마약사용의 악습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더욱 만연하게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주국내 마약중독자의 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약 15만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아편은 부유층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마약, 특히 헤로인은 중류 이하의 저소득층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62)</sup> 이같은 상황에서 볼 때 마약중독자의 확산은 곧 중류 이하의 저소득층, 특히 자신의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노동의 질적 저하는 물론 만주국내 노동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었다. 결국 건국 초기에는 소홀히 취급했던 마약문제를 이 시기에 들어와 갑자기 주목하게 된 것은 만주국내 노동공급의 시급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1940년 10월에 「阿片麻藥斷禁強化方策要綱」을 공포하여 아편마약에 대한 단금에 보다 철저를 기하였다. 이와 같이 아편마약문제에 대해 보다 단

61)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1221;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p.268.

62) 宮島幹之助, 『滿洲의 阿片と 麻藥』, 岡田芳政 外編, 앞의 책, p.110.

속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滿洲帝國政府가 편한 『滿洲建國十年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아편마약단금문제는 단순히 보건 위생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력의 消長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아국의 국책인 興農增產, 地下資源의 開發 등은 물론 國防國家體勢의 공고화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sup>63)</sup>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도 아편마약단금의 문제는 단순히 보건 위생상의 문제보다도 전시에 총력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원의 문제로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1938년부터 추진된 「아편마약단금십개년계획」은 연도별 재배면적을 계속해서 지배력이 안정된 일정지역에 한정시켜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실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항일세력의 재원 근절을 위해 1938년부터 생산지역을 열하성과 흥안서성에 한정시켰다.<sup>64)</sup> 그리고 재배지역을 살펴보면 앞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편정책 전환 직전인 1937년에는 약 100만여 무를 나타낸데 비해 1938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1942년에는 36만무로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아편마약중독자의 등록수가 아편정책이 전환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37년에 약 81만여 명에 달하던 것이 1942년에 이르러는 약 54만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다.이같은 수치로 볼 때 중일전쟁 직후 새로이 수립된 아편정책으로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은 건국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4> 연도별 아편마약중독자등록수<sup>65)</sup>

연도	등록자수(명)
1933	56,804
1934	115,447

63)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pp.273-274.

64) 佐藤弘 編, 『大東亞의 特殊資源: 阿片』, 岡田芳政 外編, 앞의 책, p.22.

65)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p.274.

1935	217, 060
1936	491, 965
1937	811, 005
1938	700, 235
1939	566, 339
1940	460, 490
1941	410, 734
1942	535, 762

요컨대 중일전쟁 발발 직후 전환된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일본의 총력전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국이 일본의 총력전체제 속에 편입됨으로써 소요되는 막대한 노동자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지역의 아편정책도 전환된 것이다.

## 5. 일본의 만주지배와 아편정책의 성격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건국한 일본 관동군은 만주국을 일본의 총력전준비의 일환으로서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 육성 강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만주지배의 실권을 장악했던 관동군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최대의 장애요소였던 만주에서의 反滿抗日鬪爭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만주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에 착수하였다.<sup>66)</sup>

만주지역 항일투쟁의 격화는 일본의 만주지배에 있어 최대의 장애 요소였으므로 그 진압과 지배력 확보는 경제개발과 함께 관동군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에 관동군은 무력토벌인 「治標工作」과 함께 항일무장세력의 생활근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하는 「治本工作」을 시행하였다. 특히 「치본공작」으로는 집단부락의 건설, 교통통신시설의 완비, 민간총기의 회수, 양귀비밀작의 단속, 호구조사 등의 공작을 들 수 있다. 이들 공작을 통해 관동군은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탄압을 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67)</sup>

66) 歴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2) 日中戰爭(1)』(東京: 青木書店, 1974), p.83.

67) 歴史學研究會 編, 앞의 책(2), pp.89-90; 加藤豊隆, 『滿洲國警察小史(第一篇) 滿洲國權力の實態について』(東京: 元在外公務員援護會, 1978), pp.97-105.

또한 관동군은 그들의 최대 목표로서 만주지역을 對蘇작전을 위한 전진 기지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그를 위해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즉 소련은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1930년대 이후 극동 소련군의 군비를 강화하였다. 이는 관동군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이에 따라 對蘇戰을 대비한 군수공업의 확충을 목표로 만주지역의 산업개발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이 계획은 관동군 참모 石原莞爾가 참모본부 작전과장으로 취임했던 1935년 8월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36년 12월에 1937년부터 41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강요」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7년부터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었고, 그해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다음해 다시 對日原料供給地의 역할이 중시되는 「수정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만주지역은 만주국 건국과 함께 일본의 총력전준비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기지로서 중시되어 지배력 확립과 함께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이 지역에서 아편근절을 명목으로 아편전매제도를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아편정책은 식민지 만주에 대한 지배정책과 밀접한 연계하에 시행되었다.

만주국 건국이후 아편법의 공포와 함께 추진된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우선 식민지 유지를 위한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1932년 6월 관동군은 6,400만 엔의 만주국 전체 세입 중 1,000만 엔은 아편전매에 의한 수입이라고 지적하였고, 이 수입을 만주국이 발행했던 건국공채 3,000만 엔의 지불담보로 이용하였다.<sup>68)</sup> 또한 아편행정은 財政部 外局에 專賣總局을 설치하여 관장시켰다. 아편회계는 전매작업특별회계로서 설정되어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이익금이 1937년에는 전체 세입의 8.5%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아편행정 부서를 재정부 하에 설치한 것이나 아편회계를 이익창출의 의도가 강한 전매작업특별회계 속에 설정하여 그 이익금을 一般會計 歲入財源의 하나로 이용한 것은 만주국의 아편정책이 식민지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전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sup>69)</sup>

68) 黒羽清隆, 『十五年戰爭史序説(上)』(東京:三省堂, 1984), p.270.

〈표5〉 아편이익금의 재정공헌도 70)

연도	이 익 금 (천엔)	세입에 대한 비율 (%)
1932	370	0.2
1933	467	0.3
1934	5,465	2.6
1935	2,859	2.2
1936	13,314	5.0
1937	26,486	8.5
1938	22,913	5.6
1939	33,932	5.6

한편 이 시기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배력 확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항일세력 토벌을 위한 「치안대책」 가운데 「치본공작」의 하나로써 아편 밀작 단속이 포함되었다. 그 실시배경은 바로 항일세력의 재원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기반을 근절시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실시방법으로서 아편 밀작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아편 생산지를 지배력이 확보된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밀작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지를 독점하여 가격경쟁에서 밀매를 배제시킬 수 있게 된 만주국은 점차 아편근절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납가격의 인하와 판매가격의 인상을 도모하여 보다 높은 전매수입을 꾀하였다. 이같은 가격정책은 결국 비싼 전매아편을 구입할 수 없게 된 흡연자로 하여금 마약소비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만주지역의 아편마약문제는 그 심각성이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된다.

중일전쟁 발발이후 시기에 시행된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일본의 총력전 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주산업개발계획에 필요한 노동력문제와 밀접한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동군은 만주국 수립이후 이 지역을 총력전 준비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기지로서 육성하고자 경제개발을

69)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1224

70)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1224 專賣總局, 『阿片事業概況』, p41.

추진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자원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1937년 7월에 발생했던 중일전쟁을 계기로 화북으로부터의 노동력수입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물려 그해 10월에 아편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아편마약단금십개년계획」이 추진되어 다음해인 1938년부터 10년간 아편을 근절시킬 것을 공포한 것이었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노동력창출과 관련이 깊은 청장년에 대한 아편단금을 엄격히 하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마약에 대해 전매를 통한 근절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아편정책의 전환이 노동자원 창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0년 10월에 공포된 「아편마약단금강화방책요강」에서 나타난 전시 총력전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통해서도 노동자원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1941년부터는 만주지역 노동정책이 「國民皆勞體制時代」로 들어감으로써 노동력 창출과 관련하여 아편단금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 1941년 7월에 관동군은 「關特演」이라는 대소작전준비를 위해 大部隊를 만주 북방 국경방면에 집중 배치시켰다. 이를 위해 국경의 진지구축과 물자수송기타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해에는 산업개발의 제2차 5개년계획도 새로이 실시되어 만주국은 화북노동자의 조달과 함께 만주지역내 노동자의 조달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국민개रो체제」를 확립하여 병역과 함께 만주인민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과하는 「國民總服役制度」의 실시를 결정하였던 것이다.<sup>71)</sup>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력 수요의 급박한 상황을 볼 때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앞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만주국의 재원적 역할보다는 노동력 수요의 급증에 따른 노동력보호라는 측면에서 아편의 엄금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양귀비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만주국의 아편중독자등록수가 1937년을 고비로 약 81만에서 1943년에는 약 47만 정도까지 감소한 것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아편마약단금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노동자원 수급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실례를 퇴원한 아편마약중독자의 노동력동원을 통해서도 알 수

71)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p.1167-1168; 小林英夫, 앞의 책, pp.465-466.

있다. 즉 만주국은 更生院을 퇴원한 중독자의 재발방지를 도모함과 함께 生産增強이라는 만주국의 국책을 시행하기 위해 만주지역 50만의 중독자 가운데 취로가 가능한 40세 이상의 남자를 우선적으로 집단수용하여 취로시켰다. 1943년의 경우 禁煙總局의 알선에 의해 龍江, 濱江 두성의 치료받은 중독자 509명을 만주 전지역의 각 방적회사에 취로시켰다. 또한 각성 자체 계획에 따라 만주 전 지역 약 1,400명의 치료받은 중독자를 도로건설, 농지조성, 탄광채굴, 농경 등 각방면에 공출하였다. 1944년에는 중공업, 광산 등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의 동원을 계획하였다.<sup>72)</sup> 이러한 동원실정을 통해 어떤 마약단금정책과 노동자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만주국은 1940년부터 아편행정기구와 아편회계를 개편하여 금연의지를 표방하였다. 만주국은 1939년 12월 27일 금연기구정비요강을 정해 종래의 民生部 保健司内の 煙政科와 專賣總局内の 管煙機構를 합쳐 새로이 民生部 外局의 禁煙總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기구개혁에 의해 아편단금부분과 아편전매부분이 민생부하에서 일원화되고 아편마약은 소금, 성냥, 석유 등의 전매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로써 전매수익을 포기하는 기구개혁이 단행된 것이다.<sup>73)</sup> 또한 1940년 1월부터 금연총국의 신설과 함께 새로이 禁煙特別會計가 창설되어 아편 및 마약을 종래의 專賣作業特別會計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로써 종래의 재정적 목적을 띤 전매작업특별회계 하에서 국민의 후생을 내건 금연특별회계로 변화되었다.<sup>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만주국의 아편정책이 財政專賣라는 성격을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은 비록 아래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40년을 계기로 점차 금연특별회계예산에 나타난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이익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주국이 아편회계를 전매특별회계로부터 분리시켜 금연특별회계로 설정한 것은 모든 아편전매수입의 이익금을 금연, 보건위생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임시세입 가운데 특별회계

72)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p.1227-1228.

73)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pp.271-272.

74)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435.

로부터의 전입금이 1941년에는 약 1,350만 엔으로 1940년에 비해 약 2배, 1942년에는 약 4,300만 엔으로 1940년의 약 7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반드시 금연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당시 특별회계로부터 이 정도의 전출금을 낼 수 있는 곳은 금연특별회계 뿐이었다.<sup>75)</sup> 이와 같이 경제건설과 국방치안비 지출의 증대로 재정이 어렵던 만주국에 있어 아편수입의 포기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세입 가운데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해 다시 아편수입을 만주국의 재정수입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1940년 아편정책의 변화로 재정전매의 성격은 만주건국 초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6〉 금연특별회계예산(단위는 엔) <sup>76)</sup>

年度	歲入	歲出	差額
1940	126,160,000	101,104,153	25,020
1941	103,951,206	87,866,868	16,085
1942	94,216,163	79,452,662	14,763
1943	110,062,000	98,642,930	11,419
1944	107,074,250	96,723,852	8,350

요컨대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아편근절에 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지배정책의 변화에 따라 아편정책도 변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 건국 후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 만주지역의 아편정책은 재정 및 「치안전매」의 성격이 강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도 「치안전매」의 성격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장기전을 위한 생산력 확충계획에 따라 노동자원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만주지역의 아편정책도 건국초기와는 달리 단금정책으로 전환되어 이에 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75)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p.447; 東京銀行集會所調査課, 『滿洲の財政・金融・物價』(東京: 東京銀行集會所, 1942), p.54.

76)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各論』, p.1224.

## 맺음말

만주지역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기 이전부터 아편문제가 심각하였다. 청말에 유입되기 시작한 아편은 민국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재원적 역할로 인해 군벌에 의해 생산 및 흡연이 여전히 장려되었다. 국민정부에 의해 특별이 성공된 이후에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아편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아갔다. 그거나 국내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만주지역을 비롯하여 중앙의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점금정책의 시행이 가져다주는 여러가지 이점에 근거하여 점금주의 아편전매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대만과 비교하여 훨씬 넓은면적과 삼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엄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엄청난 경비와 인력의 동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점금주의 아편전매제도를 채택할 경우 전매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편수입과 맞물려 있는 항일세력의 재원을 근절시키면서 그들의 수입을 정부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점 또한 있었다. 이러한 전매제도는 결국 만주지역에 대한 재정 및 지배력 확립 차원과 맞물려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1932년의 준비시기를 거쳐 1933년부터 전국에 아편재배를 공허하여 재배케 하고, 생산된 아편은 정부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매인을 통해 수매하여 도매인, 소매인을 거쳐 아편중독자에 판매하였다. 만주건국 초기에 실시된 이러한 아편정책은 중일전쟁 발발이전까지 대체로 「치안대책」의 호전과 아편에 대한 가격정책으로 전매아편의 판매실적이 호전되었다. 특히 1936년부터는 아편재배지역이 몇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은 만주지역의 항일세력이 아편을 재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세력에 대한 재원근절대책과 함께 추진된 「치안대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만주지역에 대한 아편정책은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1937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만주산업개발계획이 중일전쟁 발발로 수정개발계획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노동자원의 공급이 전

쟁의 발발로 원활하게 되지못하게 되었다. 이에 노동자원의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아편마약단금십개년계획」이 발표된 것이었다. 총력전체제하의 만주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원의 수급문제가 계속 중요시됨에 따라 1940년에는 「아편마약단금강화방책요강」까지 발표되어 아편마약단금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만주건국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었다.

요컨대 만주국 건국 초기 일본은 만주지역에 점금주의에 근거한 아편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아편수입의 재원적 역할을 중시하여 재정전매로서의 역할을 수행시킨 것이었다. 또한 항일세력의 재원근절이라는 차원에서 밀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배지역을 일정지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치안전매」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치안전매」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배력이 확보된 일정지역에 아편재배를 계속해서 허가함으로써 유지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만주 건국 초기와는 달리 총력전체제의 일환으로써 만주지역에 대한 노동자원의 수급문제가 중시되었다. 따라서 아편마약단금을 통한 노동자원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재정전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만주지역이 일본의 총력전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됨으로써 노동자원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더이상 아편흡연을 방임하여 노동자원의 회생을 통한 전매수입을 꾀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만주지역에 대한 아편정책은 만주지역에 대한 아편마약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심각성보다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아편정책이 전환,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